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6.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구미시에서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모든 박물관의 유물수집 및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 나. 박물관 개관 전부터 다양한 유물을 수집하여 박물관 전시·교육 등에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유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 나. 유물의 수집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6조)
- 다. 유물의 가치평가 및 수집심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10조)
- 라. 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제8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박물관의 유물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미시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란 구미시에서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모든 박물관을 말한다.
2.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무형의 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기탁 등에 따라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출납”이란 유물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말한다.
5.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6. “대여”란 유물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7. “열람”이란 유물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8. “복제”란 유물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 사항을 말한다.

제2장 유물수집

제3조(유물수집대상) 유물수집의 대상은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유물 및 학술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제4조(유물구입)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유물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② 시장이 경매유물,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공개구입 또는 현지구입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유물수집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

제5조(유물기증)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은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유물수집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③ 유물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유물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물수집심의위원회에서 기증사례비 요율을 결정한다.

⑤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6조(유물기탁 등)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와 유물수집심의위원회

제7조(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구입, 기증, 기탁대상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분야별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필요시마다 구성·운영하며,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해당 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구입, 기증, 기탁 유물 등에 대한 가치 평가

3. 그 밖에 유물수집 등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유물수집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유물수집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유물수집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박물관을 개관한 경우에는 박물관운영위원회가 심의위원회를 대신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은 시장이 임명·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경상북도문화재위원, 박물관분야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 있어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유물수집 제반 사항

2. 수집대상 유물의 가격 및 구입결정에 관한 사항

3. 기증의 조건 검토 및 기증유물 결정

4. 그 밖에 유물수집 등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수당)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심의평가료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장 유물의 관리

제11조(유물관리관 등 지정) ① 시장은 박물관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유물관리관은 유물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유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장유물에 대하여 망실·훼손 또는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유물을 제외한 유물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유물은 일반 유물과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유물의 망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유물의 대여 등) ① 시장은 유물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유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유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여, 열람, 복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4조(변상담보 및 책임) ① 시장은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여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유물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망실, 도난, 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심의위원회가 정한 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映寫會)·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8조(재산의 기부) ①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설의 설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확충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유물 수집(구입 또는 기증)에 따른 세출 발생(안 제4조, 제5조)
-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 및 유물수집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지급에 따른 세출 발생(안 제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박물관 유물수집 및 위원회 운영수당 지급 등의 비용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용		산출내역	금액
합 계			84,500
유물 수집비		80,000,000원×1식	80,000
위원회 수당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	100,000원×5명×3회	1,500
	유물수집심의위원회	100,000원×10명×3회	3,000

※위원회 수당 산출근거 : 70,000원(기본) + 30,000원(2시간이상 초과)

※참고사례 : 경상북도(‘14~‘16)

- 경상북도박물관 전시자료 수집 및 조사(‘14~‘16) 80,000천원

4. 작성자

- 문화관광담당관실 학예연구사 박근아(054-480-6642)

소관 실 · 과		문화관광담당관실
입 안 자	과 장	김 구 연
	담 당	윤 태 호
	담 당 자	박 근 아 (480-6642)